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

서울중앙지방검찰청

공보담당관 이준호

전화 02-530-4780 / 팩스 02-536-5410

보 도 자 료

2024. 12. 3.(화)

제 목 **직권을 남용하여 아들을 선관위에 부정 채용한 前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불구속 기소**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
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▣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1부(부장검사 이찬규)는, 인천시선관위 경력 공무원 경쟁채용과정에서 아들을 부정 채용하게 하고, 채용 후 1년 만에 아들을 강화군선관위에서 인천시선관위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하여 관사까지 제공한 **前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A**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, 국가공무원법위반죄로 오늘(12. 3.)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.

▣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의 수사요청을 받아 수사한 결과,

- '19. 11.~12. **A**(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)는, 아들 B를 채용하기 위해, 인천시선관위 채용 담당자 C로 하여금 **A와 친분이 두터운 D를 면접위원으로 선정**케 하는 등 **B에게 유리한 채용 절차를 진행**하게 하고, **D에게도 면접 전에 전화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**하여 B를 합격하게 한 다음, **회피 없이 직접 B의 전입을 승인**하여 **강화군선관위에 임용**시키고,

- '20. 11.~12. **A**(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)는, **B의 경력 관리**를 위해 B를 인천시선관위로 전입시키고자, 전입 심사 담당자 E로 하여금 **전입자격요건을 '맞춤형 조정'**을 하게 하는 등 B를 위한 전입 절차를 진행하게 하고, B의 편의만을 위해 중앙선관위 및 인천시선관위 관사 담당자 **E, F**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여 **관사를 부당하게 제공**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.

▣ 선관위 최고위 공무원인 피고인은 **선관위 공무원직 세습 및 아들의 경력 관리** 등을 위해 **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인사제도 및 국유재산 관리 권한을 사유화**하였습니다.

▣ 앞으로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**공소유지에 만전**을 기하고,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실체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Ⅰ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1 피고인

- **A**(60세, 前 중앙선관위 사무총장)

2 공소사실 요지

- **인천시선관위**(강화군선관위) **부정 채용 관련**

- '19. 11.~12.경 아들 **B**를 채용하기 위해, 직권을 남용하여 인천시선관위 총무과장(채용 담당자) **C**로 하여금, **A**와 친분이 두터운 **D**(인천시선관위 지도과장)**를 면접위원으로 선정**케 하는 등 **B의 합격을 위한 채용 절차를 진행**하게 하는 한편, **D에게 면접 전에 전화하여 B의 응시사실을 알리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**하고, 채용 합격자로 선정된 **B**의 전입 승인 요청에 대해 **회피 없이 직접 전입을 승인**하는 등 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 **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, 국가공무원법위반]**

- **인천시선관위 부정 전입 관련**

- '20. 11.~12. **B**의 **선관위 내 경력 관리**를 위해 당시 강화군선관위에 근무 중이던 **B**를 인천시선관위로 전입시키고자, 직권을 남용하여 **인천시선관위 총무과장**(전입 심사 담당자) **E에게 B의 전입 선발을 지시**하여, **E**로 하여금 전입자격 요건 중 **선관위 재직기간 요건을 '3년 이상'에서 '1년 이상'으로 하향 조정**케 하고, 실질적인 **능력의 검증 없이 B를 전입 심사에서 합격**하게 하도록 함 **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, 국가공무원법위반]**

- **관사 부당 지급 관련**

- '20. 11.~12. 아들 B의 인천시선관위 **전입 이후의 편의를 도모**하기 위해, 직권을 남용하여 **중앙선관위 시설과장**(관사 담당자) **F에게 인천시선관위에 관사 할당량을 1채 더 늘일 것을 지시**하고, 인천시선관위 총무과장 **E에게도 늘어난 관사 1채를 B에게 배정할 것을 지시**하여, **E**로 하여금 **B**가 미리 계약하여 온 오피스텔을 관사로 사용하도록 승인하게 함 **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**

Ⅱ 주요 수사 경과

- 2024. 4. 서울중앙지검, 피고인 등에 대한 감사원 수사요청서 접수
- 2024. 6.~9. 서울중앙지검, 피고인 등 주요 관계인들의 주거지, 감사원, 중앙선관위, 인천시선관위 등 압수수색
- 2024. 8.~11. 서울중앙지검, 피고인 및 참고인들 조사 (56명 88회 조사)
- 2024. 11. 20. 서울중앙지검, **A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**

※ 11. 22. 사안이 중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의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 기각

- 2024. 12. 3. 서울중앙지검, **A 불구속 기소**

Ⅲ 수사 결과

- 피고인은 당시 지방직 공무원이던 아들을 **국가직인 선관위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**하게 하고, 채용된 아들의 **경력 관리**를 위해 **격오지인 강화군선관위에서 인천시선관위로 부정 전입**하게 하였으며, 아들의 편의만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**관사를 지급**하게 하는 등 **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인사 제도와 국유재산 관리 권한을 사유화**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.

-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**중앙선관위 고위직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**하여, 같은 **인천 지역 출신**으로서 **평소 피고인과 친분**이 있어 피고인의 지시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인천시선관위 업무 담당자 등 부하 직원들에게 **은밀하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**하였습니다.

● 최초 감사원은, (ⅰ)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▲인천시선관위 부정 채용 혐의, ▲대검찰청 포렌식 교육 특혜 혐의, ▲인천시선관위 부정 전입 혐의, ▲부당 관사 제공 혐의, (ⅱ) 피고인의 특정인에 대한 방호직 부정 채용 혐의, (ⅲ) 피고인의 공용 물품(컴퓨터, 노트북)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 요청하였습니다.

-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지 등 압수수색,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,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**선관위 부정 채용 혐의, 인천시선관위 부정 전입 혐의, 부당 관사 제공 혐의를 규명하여 불구속 기소**하였고,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발견하기 어려워 불기소(혐의 없음) 처분하였습니다.

※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선관위 부정 채용 혐의는, 2022. 12.경 경찰이 불송치(혐의 없음)하였던 사건과 같은 혐의 내용임

Ⅳ 향후 계획

●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**공소유지에 만전**을 기하는 한편, 현재 수사 중인 다른 감사원 수사요청 사건 등의 **실체 규명을 위해 최선**을 다하겠습니다. ▨